

2004. 12.

제115회 거창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건위원회

# 조 례 안 검 토 보 고

- ① 거창군공중화장실관리조례개정조례안
- ② 거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 ㉔ 거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4. 12. 13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4. 12. 13
- 라. 의안번호 : 제2004 - 63호

### 2.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가. 제정이유

○ 2004.3.11제정된 「재난안전관리기본」 제67조 규정에 의거기존의 “재난관리기금”과 “제해대책기금”을 통합하여 운영·관리하기 위함.

#### 나. 주요골자

-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금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액 1%로 함(안 제2조 1호)
- 법정정립액의 100분의 30이상금액과 나머지 금액 및 발생이자는 별도 운용·관리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장기에치금액과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군 관내 금융기관에 예치·운용하도록 함(안 제4, 5조)
- 기금의 사용용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 목적외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용도를 제한함(안 제6조)

○ 재난위험지역 또는 재난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을 받은 주민에게는 임대주택 실소요 이주지원비와 3천만원 한도내에서 총 소요금액의 70%의 이하의 임차비용을 용자토록 함.(안 제7조)

○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실과장으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함.(안 제10조)

○ 지방재정법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안 제13조)

○ 종전의 거창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와 거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던 기금은 동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하고,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부칙조항에 규정함.(부칙 제3항)

### 3. 검토의견

○ 동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각각 운용되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2004.3.11 통합법률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통합 운용·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이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종전 조례에 대하여 변경된 주요 내용을 보면

- 종전 기금운용과 관련한 결정등을 재난관리기금에서는 “거창군안전대책위원회”에서 재해대책기금은 “거창군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

으나 제정되는 조례에서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실·과장을 위원으로 15인 이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군 조정위원회 구성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재난위험지역 또는 재난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을 받은 주민에게는 이주에 따른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을 실소요 이주지원비 지급과 3천만원 한도내에서 총 소요금액의 70%의 이하의 임차비용을 용자토록 변경한 것은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거창군의 전세금의 규모를 볼때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검토됨.

그러나,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사항은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특정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전세금의 용자조건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조례의 구체적인 위임없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 제7조제3항으로 제정한 것은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조례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검토됨.

## 4. 참고자료

### □재해 및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적립금액	장기예탁(36개월)	보통예금	비고
재해대책기금	462,175,830	459,900,000	2,275,830	군금고예치
재난관리기금	120,857,460	117,995,000	2,862,460	“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2004.3.11제정 법률 제07188호)

####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①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3.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것에 한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4.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5. 재난원인분석 및 침수흔적조사, 침수흔적도 작성·보존 등의 사업
6.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7.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

②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은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 제20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제1항제7호에서“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2.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3. 농업생산기반시설중 배수장, 보, 용수로·배수로 및 방조제의 정비사업
4. [영 제3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정비사업
5.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사업
6.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7.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8.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대책사업